

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0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4. 1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8조(기존규제의 심사)에 따라 규제개혁의 적극성 제고
- 나. 행정안전부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 규제입증책임제 관련 근거 조문 신설(안 제2조의2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2. 3. 2. ~ 3. 22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존규제의 심사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.

1. 기존규제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2.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【별지 제3호 서식】 및 【별지 제4호 서식】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(건의과제)

건의제목					
지 자 체			연번		
소관부서	국 장	(직책/성명/연락처)			
	과 장	(직책/성명/연락처)			
	담 당	(직책/성명/연락처)			
건의단체			건의계기 (건의일자)		
건의내용	(조례/규칙/시행규칙 명)				
당 초 검토결과	☐ 일부수용		☐ 중장기검토	☐ 수용곤란	
	(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)				
(재) 검 토 결 과	☐ 수용	☐ 일부수용	☐ 중장기검토	☐ 수용곤란	
추진일정					

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(자치법규)

자치법규	○○○○조례/규칙/고시(○○군 훈령-00호) 등		
지 자 체			연번
소관부서	국 장	(직책/성명/연락처)	
	과 장	(직책/성명/연락처)	
	담 당	(직책/성명/연락처)	
제·개정	제정일 :		
	최근개정일 :		
검토개요	<근거규정> ○ <주요내용> ○ ○ <준치 필요성> ○		
추진일정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기존규제의 심사)</u>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. 1. 기존규제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.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의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【별지 제3호 서식】 및 【별지 제4호 서식】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

	<u>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④ <u>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</u> <u>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</u> <u>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</u> <u>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</u> <u>있다.</u>
--	--

□ 행정규제기본법

제17조(규제 정비의 요청)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(告示)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(이하 “정비”라 한다)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,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, 답변·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기존규제의 심사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1.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2. 삭제
3.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.

□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

제12조의2(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)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(이하 “접수일”이라 한다)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 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